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중소형고배당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2. 작성기준일 : 2020.04.05

3. 효력발생일 : 2020.04.17

4. 정정사유

- ① 결산에 따른 수익률변동성 변경(4.84%→6.52%) 및 위험등급변경(5등급→4등급)
- ② Class S-P,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신설
- ③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15조 개정사항 반영
- ④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지원확대)
- ⑤ 당사 규정 정비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선정기준 기재 정정
- ⑥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등 업데이트

5. 투자설명서 정정 사항

| 구분 | 정정사유 | 변경(전) | 변경(후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요약정보 | | | |
| 위험등급 |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| 투자위험등급 5등급(낮은위험) 우리자산운용(주)는 이투자신탁의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| 투자위험등급 4등급(보통위험) 우리자산운용(주)는 이투자신탁의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|
| 투자비용 |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 - | - |
|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 |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 - | - |
| 운용전문인력 |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 - | - |
|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기타-퇴직연금 | 클래스 추가에 따른 내용 추가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<추가>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종류 S-P의 경우 개인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이며, 종류S-P(퇴직)이 퇴직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| | | |
|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| 클래스 추가 | <추가> | -S-P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[D4447] -S-P(퇴직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 [D4449] |
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| 클래스 추가 | <추가> | -S-P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[D4447] -S-P(퇴직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[D4449] |
|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|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 - | - |
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구조 퇴직연금(P) | 클래스 추가에 따른 내용 추가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<추가>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종류 S-P의 경우 개인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이며, 종류S-P(퇴직)이 퇴직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|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및펀드위험등급 변경 |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은 4.84% 로 6등급 체계 중 5등급(표준편차 5%이하)에 해당하는 낮은 위험 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투자자는 해당 수준의 변동성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고, 이에 따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 |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은 6.52% 로 6등급 체계 중 4등급(표준편차 10%이하)에 해당하는 보통 위험 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투자자는 해당 수준의 변동성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고, 이에 따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 |
|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3) 종류별 수익증권 매입 자격 | 클래스 추가 | <추가> | < 표 1 >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 | 클래스 추가 클래스 추가 | < 추가 > < 추가 > | S-P, S-P(퇴직) : 없음 < 표 2 > |

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는 보수 및 비용 ※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예시 | 클래스 추가 | < 추가 > | < 표 3 > |
|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 배분 (2) 상환금 등의 지급 나. 과세 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|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(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지원확대) | 한국예탁결제원 - | 전자등록기관 - |
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<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재무정보, 수익률 등 업데이트 >
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 |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 - | - |
|--|------------------|---|---|
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| | | | |
|--|---|---------|--------|
|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|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한국예탁결제원 | 전자등록기관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|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한국예탁결제원 | 전자등록기관 |
|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다. 투자중개업자선정기준 |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당사 규정 정비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선정기준 기재 정정 | - | - |

6. 간이투자설명서 정정 사항

| 구분 | 정정사유 | 변경(전) | 변경(후)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|--|
| 위험등급 |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| 투자위험등급 5등급(낮은위험) 우리자산운용(주)는 이투자신탁의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| 투자위험등급 4등급(보통위험) 우리자산운용(주)는 이투자신탁의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투자비용 |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 - | - |
| 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 |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 - | - |
| 운용전문인력 |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 - | - |
|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기타-퇴직연금 | 클래스 추가에 따른 내용 추가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<추가>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종류 S-P의 경우 개인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이며, 종류S-P(퇴직)이 퇴직연금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
< 표1 >

| 종류별(Class) | | 가입자격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S-P | 수수료미징구 -온라인슈퍼 -개인연금 |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정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|
| S-P (퇴직) | 수수료미징구 -온라인슈퍼 -퇴직연금 |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정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 |

< 표2 >

| 구분 | 집합투자 업자보수 | 지급비율(연간,%) | | | | | | | | 증권 거래 비용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
| | | 판매회사 보수 | 신탁업자 보수 |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| 총보수 | 기타비용 | 총보수 · 비용 | (동종유형 총보수) | 합성 총보수·비용 (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) | | |
| S-P | 수수료미징구- 온라인슈퍼- 개인연금 | 0.4500 | 0.2200 | 0.0300 | 0.0120 | 0.7120 | 실비 | 0.7120 | - | 0.7120 | 실비 |
| S-P (퇴직) | 수수료미징구- 온라인슈퍼- 퇴직연금 | 0.4500 | 0.2100 | 0.0300 | 0.0120 | 0.7020 | 실비 | 0.7020 | - | 0.7020 | 실비 |

< 표3 >

| 종류(Class) | | 투자기간 | 1년 | 2년 | 3년 | 5년 | 10년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S-P | 수수료미징구- 온라인슈퍼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73 | 149 | 228 | 396 | 884 |
| | -개인연금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피투자 집합기구 보수 비용포함) | 73 | 149 | 228 | 396 | 884 |
| S-P | 수수료미징구-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72 | 147 | 225 | 391 | 873 |

| 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(퇴직) | 온라인슈퍼 -퇴직연금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피투자 집합기구 보수 비용포함) | 72 | 147 | 225 | 391 | 873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
7. 집합투자규약 정정 사항

| 구분 | 정정사유 | 변경(전) | 변경(후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2조(용어의 정의) | 전자등록기관 용어 정의 추가 | <신설> | 8. “전자등록기관” 이라 함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. |
| 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| 클래스 신설 |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~13. <생략> 14. <신설> 15. <신설> |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~13. <좌동> 14. Class S-P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15.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|
| 제9조(수익권의 분할) |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. |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을 발행한다. |
| 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| 클래스 신설 | ① 집합투자업자는-<생략>-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-<생략>-전자등록한다. 1~13. <생략> | ① 집합투자업자는-<좌동>-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-<좌동>-전자등록한다. 1~13. <좌동>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| 14. <신설> 15. <신설> | 14. Class S-P 수익증권 15.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|
| 제14조(수익자명부) |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한국예탁결제원 | 전자등록기관 |
| 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 |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한국예탁결제원 | 전자등록기관 |
| 제39조(보수) |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신설 | ③제1항의 규정에-<생략>-곱한 금액으로 한다. 1~13. <생략> 14. <신설> 15. <신설> | ③제1항의 규정에-<좌동>-곱한 금액으로 한다. 1~13. <좌동> 14. Class S-P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5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2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2 15. Class S-P(퇴직)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5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1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2 |
| 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| ①~③ <생략> ④ <신설> | ①~③ <이하동일>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제 5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| ⑤ <신설> | <p>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 <p>⑤ 제 4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, 변경시행일 전까지 상호협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대상금액 :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시행일 전일까지 제 39 조제 3 항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보수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, 사업성평가, 금융자문 등)</p> <p>2. 대상기간 : 변경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</p> |
| 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 |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한국예탁결제원 | 전자등록기관 |
| 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|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| 한국예탁결제원 | 전자등록기관 |
| 제52조(수익증권통장거래) | |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(Class C-P1, Class C-P1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 |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(Class C-P1, Class C-P1e, Class S-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 |